

# 2020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참여단체 공모 요강

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업 작가에게 안정적 창작환경을 제공하고, 화랑의 체계적 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동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## □ 공모개요

| 구분           | 내 용   |
|--------------|---|
| 공모명          | 2020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<참여단체 공모>   |
| 사업목적         | - 전업 신진작가의 안정적 창작 활동 기반 구축<br>- 단체(화랑 등)의 체계적 작가 발굴·육성 기반 조성<br>- 미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   |
| 모집일정         | 2020년 1월 29일(수) ~ 2월 12일(수) 18:00까지   |
| 지원신청<br>자격   | <p>&lt;작가 공개모집&gt;을 통해 모집된 작가*와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(화랑 등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8년 1월 이전에 설립되었으며, 2018-2019년 매년 2회 이상의 기획전을 개최한 단체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획전 : 초대전 포함/ 상설전, 대관전 및 아트페어 부스전 제외</li> <li>* 연 2회 이상, 총 4회 이상 기획전 실적 작성 및 증빙 필수(지원신청서 내 기재)</li> <li>* 기획전 실적 증빙은 전시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(리플릿, 포스터, 도록 등)만 인정 가능, 전시 전경 이미지 인정 불가</li> </u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[업태: 소매업 / 종목: 화랑(갤러리), 미술품(예술품)]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단체</li> <li>-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</li> <li>-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단체</li> <li>- 연 매출액 100억 미만인 단체 (2018년 기준)</li> <li>-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(<a href="http://www.k-artsharing.kr">www.k-artsharing.kr</a>) 기관 회원가입 및 정보 등록/업데이트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※ 2020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&lt;작가 공개모집&gt;을 통해 모집된 작가(풀)는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의 '전속작가제' 메뉴에서 확인 가능<br/>(* 공개기간 : 2019.12.16(월) ~ 2020.2.12(수))</p> </div> |
| 공모유형         | <p>① 신규 단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착순으로 선발하되 서류 정량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</li> </ul> <p>② 2019 우수 전속화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전속화랑이 작가와 계약을 지속하여 유형②에 지원 시 심의 없이 선정</li> <li>* 우수 전속화랑이라도 신규 작가로 지원할 경우 유형①로 지원</li> </ul>   |
| 지원대상<br>사업기간 | 2020년 3월 ~ 12월 (총 10개월)   |
| 지원규모         | <p>최대 96개 단체 (작가 수 기준 96명)</p> <p>* 단체 당 지원 작가 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원단체 수는 축소될 수 있음</p>  |

| 구분              | 내 용   |
|-----------------|---|
| 지원내용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체(화랑 등)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작가의 창작활동비 일부 국고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개 단체가 최대 3명의 전속작가까지 지원 신청 가능</li> <li>* 작가 1인당 1천만원 지원 (월 100만원 × 10개월)</li> </ul> </li> <li>- 전속작가 프로모션비 지원 : 작가 1인당 정액 250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전속작가가 2인 이상인 경우, 작가별로 250만원을 집행해야 하며 혼용 사용 불가</li> <li>㉠ 전속작가의 해외 매체광고비의 일부 (아트넷, 아트시 등)</li> <li>㉡ 국내 아트페어에 전속작가 참가 시 부스비의 일부</li> <li>㉢ 단체의 전용 전시공간 기획전에 참여한 전속작가 대상 평론 사례비 (단, 해당 평론이 전시 도록 또는 타 매체에 게재되어야 인정. 매체 게재 시 국내 잡지광고비의 일부를 인정하되 광고의 내용 또한 지원 전속작가와 관련한 내용이어야 함)</li> </ul> </li> <li>- 연말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 전속화랑을 선정하여 차기년도 연속 지원</li> <li>- 전속작가제 안정적인 정착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</li> <li>- 전속작가 작업 활동 온라인 홍보, 미술은행 작품구입 추천 등</li> </ul>   |
| 지원조건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속작가 창작활동비의 33.3% 자부담 (작가 1인당 월 50만원 × 10개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작가 1인당 월별 창작활동비(150만원) = 국고지원금(100만원) + 단체 자부담(50만원)</li> </ul> </li> <li>- 전속계약 시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</li> </ul>  |
| 선정단체(자) 공통 의무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정단체 및 작가 대상 사전 워크숍 및 결과공유회, 강의프로그램 참석 필수</li> <li>- 모든 홍보 및 인쇄물(홈페이지 포함)에 문화체육관광부,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, 「예비 전속작가제 지원」 사업 BI 삽입</li> <li>-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전속작가 프로모션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 보고서(증빙자료 포함) 연 2회 제출</li> <li>- 사업 종료 시 전속작가 창작활동비 지급 증빙(월별 원천징수영수증) 및 결과보고서 제출, 해당 사업 만족도조사 응답 필수</li> <li>- 전속작가 작품 판매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(이미지 포함) 제출 필수(지정서식 제공) 제출된 상기 정보는 「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k-artmarket.kr">www.k-artmarket.kr</a>)」에 게재</li> <li>-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, 공식 SNS 홍보를 위한 전시 및 작가/작품의 정보 활용 협조</li> <li>- 「미술시장실태조사」 매년 응답 필수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속계약 2년 이내에 최소 1회의 기획전 / 3년 이내에 최소 1회의 개인전 개최 필수</li> <li>- 2019년도 선정단체는 2019-2020년 동안 최소 1회의 전속작가 기획전 개최 필수</li> <li>* 단, 상기 전시는 선정단체의 전용 전시공간에서 개최한 전시로 한정</li> </ul> </div> |
| 신청자격 제외대상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8년 1월 이후에 설립된 단체</li> <li>- 2018-2019년에 연 2회 이상 기획전 개최 실적이 없는 단체</li> <li>-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지 않는 단체</li> <li>- 2018년 기준 연 매출액 100억 이상인 단체</li> <li>-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단체의 지사</li> <li>- 학교(초, 중, 고교 및 대학교)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(동아리)</li> <li>- 지방자치단체(광역시·도, 시·군 등 기초 자치 단체),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</li> <li>- 국·공립(시·도·군립) 문화예술기관</li> <li>- 보조금 관계법령 지원금 관리규정 상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으로 통보된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</li> </ul>  |

## □ 추진절차

|          | 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절차   | 유형   |
|----------|---|--|------|
| 작가 공개 모집 | ① <작가 공개모집><br>'19.11.1 ~ 11.29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속계약을 원하는 신진작가는 &lt;작가 공개모집&gt; 지원신청서, 포트폴리오 제출 및 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(<a href="http://www.k-artsharing.kr">www.k-artsharing.kr</a>) 상의 작가 정보 등록/업데이트 후 '전속작가제' 메뉴에서 '전속작가제 참가 신청 - 신청완료' 버튼 클릭</li> <li>지원 대상 작가(풀) 선정</li> </ul> |      |
|          | ② 작가(풀) 공개<br>'19.12.16 ~ '20.2.12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미술공유서비스」 누리집 상의 '전속작가제' 메뉴에 작가(풀) 이력 및 포트폴리오 공개</li> </ul>   |      |
| 참여 단체 공모 | ③ 작가-화랑<br>전속계약<br>'19.12월 중 ~ '20.2월 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체(화랑 등)는 전속계약을 원하는 작가를 자유롭게 선택</li> <li>전속계약 제의를 받은 작가는 원하는 단체를 최종 선택</li> <li>단체와 작가는 문체부 고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속계약 체결<br/>※ 작가-화랑의 전속계약은 자율적으로 체결하며, 센터에서 매칭하지 않음</li> </ul>   | ①    |
|          | ④ <참여단체 공모><br>'20.1.29 ~ 2.12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작가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단체는 &lt;참여단체 공모&gt;에 지원신청서 제출<br/>※ 1개의 단체가 최대 3명의 전속작가까지 지원 신청 가능</li> </ul>   | ①, ② |
| 결과 발표    | ⑤ 심의 및 선정<br>'20.2월 중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착순으로 선발하되 서류 정량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신규 지원단체 선정</li> <li>2019 우수 전속화랑(작가)은 심의 없이 연속 지원</li> </ul>  | ①    |
|          | ⑥ 선정단체(자) 발표<br>'20.2월 말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e나라도움 및 「예술경영지원센터」 누리집에 선정 결과 공고</li> </ul>   | ①, ② |
|          | ⑦ 교부금 지급<br>'20.3월 중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선정단체 및 작가 대상 사전 워크숍 개최</li> <li>교부금 지급<br/>※ 작가 창작활동비는 단체(화랑 등)를 통해서 지급</li> </ul>  | ①, ② |

※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신청방법

- 전속계약을 맺은 단체(화랑 등)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에 직접 신청
- 접수기간 : 2020년 1월 29일(수) ~ 2월 12일(수) 18:00까지
- ※ 2020년 2월 12일(수) 18:00까지 'e나라도움' 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, 18:00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함

○ 접수방법 :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‘e나라도움(www.gosims.or.kr)’을 통해 신청

-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: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실 1670-9595

- ※ e나라도움 홈페이지 이용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며, 공인인증서 필요
- ※ e나라도움 가입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, 개인회원 가입 불가
- ※ 본 지원사업은 예치형 사업으로 e나라도움 등록 필수
- ※ 우편, 방문, 이메일 접수 불가

○ 제출서류 : 전자파일(한글, 워드, PDF, PPT) 형태로 제출

| no | 구분             | 제출 서류  | 제출방법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1  |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작성 | e나라도움 시스템 내의 지원신청서 및 지출예산서   | e나라도움 시스템 내에서 작성  |
| 2  | 지원신청서          | 지원신청서 서식* 작성 후 제출<br>* 「예술경영지원센터」 누리집(www.gokams.or.kr)에서 다운로드<br>* 기획전 실적 및 전용 전시공간 운영 자료 포함 필수 (미제출시, 해당 실적 인정 불가) | e나라도움 시스템 첨부파일 제출 |
| 3  | 단체증빙서류         | 사업자등록증(JPG 또는 PDF 파일) 1부<br>* 사업자등록증 상 [업태: 소매업 / 종목: 화랑(갤러리) 또는 미술품(예술품)]이 명시되어야 지원신청 자격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| e나라도움 시스템 첨부파일 제출 |
| 4  | 전속계약서          | 작가와 협의 하에 작성되고 각각의 서명 및 도장이 날인(간인 필수)된 전속계약서 사본(PDF파일) 1부<br>* 문체부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 서식 사용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나라도움 시스템 첨부파일 제출 |

※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이후 수정할 수 없음

## □ 심의개요

○ 선정방법 : 선착순으로 선발하되 지원신청 자격, 지원신청서 내 과거 사업성과 등 서류 정량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

- ※ 단체 당 지원 작가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지원단체 수는 축소될 수 있음
- ※ 유형 ②로 지원한 2019 우수 전속화랑은 별도의 심의 없이 선정

○ 심의방향

- ① 화랑 운영의 제반 여건(홈페이지, 전용 전시공간 등) 보유 여부
- ② 전속작가의 장기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성(전시 기획, 아트페어 참가 등) 정도
- ③ 전년도 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경우 과거 사업 수행 성과 반영

○ 선정결과 : e나라도움 및 「예술경영지원센터」 누리집([www.gokams.or.kr](http://www.gokams.or.kr)) 공고

## 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(※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)
- 지원신청 내용(과거 기획전 실적, 전용 전시공간 유무 등)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또는 과거 수행했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확정되었다더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해당 작가와 단체 대표가 친인척(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 관계인 경우 전속작가제 지원 불가함
  - ※ 친인척 관계로 밝혀진 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예정
- 본 공모 이전 수행했던 지원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이 처리 완료된 이후 교부 진행이 가능함
- 교부 확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집행한 금액만 인정 (사전 및 사후 집행은 환수 조치됨)
  - ※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(지원금) 집행은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[www.gosims.go.kr](http://www.gosims.go.kr)) 내에서만 가능
-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
  - ※ 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(예시 :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,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, 타대표 명의 포함) 통장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,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)
- 2019년도 선정단체가 2년 이내 전속작가 참여 기획전, 3년 이내에 전속작가 개인전을 개최해야 함
- 선정단체 간 지원금 집행이 불가하며 집행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.  
특히 평론사례비의 경우 선정단체의 갤러리스트 및 대표자에게 지급 불가

※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국고보조금 지침 개정

\*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(성폭력범죄 자)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(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제4항제3호 참조)

\*\* 성폭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보조사업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(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8조제2항제4호 참조)

## □ 관련문의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 시각예술유통팀

- 전화문의 : 02-2098-2919
- 이메일문의 : [artre@gokams.or.kr](mailto:artre@gokams.or.kr)